

## 명예학위 수여규정

제정 2011.09.0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 명예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명예학위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사망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한 자.
2.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없어 졸업하지 못한 자.
3.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
4. 우리 대학의 명예를 높였거나 발전에 공헌한 자
5. 기타 총장이 명예졸업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

**제3조(수여의 결정)** 명예학위의 수여는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**제4조(수여시기)** 명예학위 수여의 시기는 매년 2월과 8월, 2회로 한다.

**제5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